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2.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의 확진자 감소양상 및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아 래 -

○ 적용기간: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외 지역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2: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5: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6: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8)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0)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11)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자제

○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14개 시도



주무관	홍명기	행정사무관	박은경	생활방역팀장	조우경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이기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	강도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2021.2.13. 권덕철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85** 접수 인사조직과-1522 (2021. 2. 13.)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7층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725 팩스번호 044-202-0000 / mk7069@korea.kr / 비공개(5)